

국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규칙

1974. 2. 18

건설부령제 139호

개정 1976. 8. 26. 건설부령제 179호

개정 1979. 1. 6. 건설부령제 217호

제 1조(목적) 이 영은 공원법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용어의 정의)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<개정 76.8.26.건설부령제 179호>

1. "어린이"라 함은 국민학교 학생 및 만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.
2. "학생"이라 함은 정복을 착용하거나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의 학생을 말한다.
3. "군인"이라 함은 정복을 착용한 하사이하의 군인을 말한다.
4. "어른"이라 함은 어린이·학생·군인 및 만 6세 이하의 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.
5. "단체"라 함은 어린이·학생·군인 또는 어른 30인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.

제 3조(입장료 징수기준)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별표의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다만, 입장자가 특히 많은 기간에는 별표에 정한 요금의 2배상당액 범위안에서 정하되, 그 기간을 연간 4월을 초과할 수 없다.

<개정 79.1.6 건설부령제 217호>

제 4조(입장료의 게시) 공원관리청은 당해 공원의 입장료를 입장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 5조(입장료의 납부등) ①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입하여 이를 납부한다.

②입장권을 별지 서식에 의한다.

제 6조(시설사용료의 징수) ①시설사용료는 당 [별지서식] <개정 76.8.26.건설부령 제 179호>

해 공원시설 설치에 소요된 시설비와 그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인 조별로 정한다.

②공원관리청은 시설사용료를 당해 시설 부근의 사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 제 7조(입장료 등의 면제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 및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<개정 76.8.26 건설부령제 179호, 79.1.6 건설부령제 217호>

1. 국민 및 수행자
2.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
3. 만 6세이하의 자 및 만 65세이상의 자
4. 국가기관에서 정양중인 상이군경
5.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및 건설부장관이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자
6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
7. 당해 국립공원구역안에 거주하는 자
8. 당해 국립공원구역안에 있는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
9.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,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불교신도
10. 기타 건설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자

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76.8.26 건설부령제 179호)

이 규칙은 197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79.1.6 건설부령제 217호)

이 규칙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<개정 76.8.26.건설부령제 179호>

<개정 79.1.6.건설부령제 217호>

국립공원입장요금표

단위: 원

구 분	어 른	군인·학생	어 린이
개 인	150	100	50
단 체	120	70	30

입장권원부 일련번호: ○○○국립공원 원 ○○○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장인	입 장 권 일련번호: ○○○국립공원 원 ○○○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장인	국립공원주요경관사진 또는 안내도
--	--	-------------------

95mm

..... 59.5mm 59.5mm 150mm

7802-4-2 1974. 1. 15승인 26.9mm × 95mm (백상지 180g/m²)

- 비고: 1. 안에는 어른·어린이·군인·학생·단체의 구분의 큰 글씨로 표시할 것
 2. 경관사진 또는 안내도 이면에는 우편법에 의한 그림염서 표시를 할 수 있다.
 3. 허용오차: ± 0.5mm